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문화를 경영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도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관 주도가 아닌 민간과 협력관계 유지, 지속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시민을 문화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등 사업 효과를 지역 내 축적 및 선순환 시켜 나가기 위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심의요건 충족
-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다. 위탁사무내용 :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

- 문화도시 사업 기획·홍보·운영
-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문화인재 양성 및 지원 : 문화청년활동가 및 문화전문인력 양성
- 도시가치 발굴·활용 : 문화도시 포럼·아카이브, 문화도시 브랜딩
- 지역문화 활성화 : 문화공동체 육성, 문화기획지원
-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 : 문화도시 여행, 도시교류 프로그램 등

라. 위탁기간 : 2022년~2025년(3년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 연 240,000천원

(단위 : 천원)

전체예산	인건비	운영비
240,000	212,000	28,000

3. 부서의견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을 보유한 민간실행주체 마련을 필수적으로 요구중이며 문화도시 지정 심의 시 문화도시 실현가능성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는 주체적 문화시민 양성과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관계법령

□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박 정 은
	담 당	김 혜 진
	담 당 자	임 윤 이 (480-6637)